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신속심의 근거 마련 >
■ 김윤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03793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전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신속심의 근거 마련(안 제25조제8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윤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9. 9.

다. 회 부 일 :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으로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Ⅲ. 검토 의견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신속심의 근거 마련(안 제25조제8항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회의의 심의대상 중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다른 사안보다 먼저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검토 의견

- 방심위는 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직무에 대해 제22조에 따른 회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고, 제24조에 따라 방송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25조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법 제21조¹⁾는 각 호에서 방심위의 직무를 정하고 있고, 주요 직무로는 「방송법」 제32조²⁾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 제100조³⁾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⁴⁾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등이 있으며, 해

-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2)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이하 생략)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당 직무는 방심위 회의 안전이 됨.

- 방심위의 회의는 법 제22조⁵⁾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동 조에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이하 생략)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제22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

서 회의 공개 원칙,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의 회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4조6)에서 방심위는 제21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심의규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심위규칙)」) 및 정보통신(「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심위규칙)」)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7)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제1항8)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안건의 심의 순서가 결정되고 있음.

○ 개정안은 방심위의 심의대상 안건 중 수시기관의 장 또는 관계

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다른 사안보다 먼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 이미 방송·정보통신의 내용이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발한 사례에 대해서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방심위의 안건 순서에 대해서는 방심위 규칙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신속심의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신속심의 근거를 명백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도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방심위가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속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신속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신속심의 여부를 방심위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과 재량 규정 중 어느 규정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예상된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명백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장 등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이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⁹⁾에서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수사기관
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시 신속히 방심위 심의를 통해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
하다는 입장임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심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에서 국가보안법 위
반 등 불법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시 7일
이내 방심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과 개정안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한편, 개정안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있어서 신속심
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제25조제1항¹⁰⁾은
심의규정이 아닌 제재조치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
안의 취지에 따를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2호 및 제3호¹¹⁾에
따른 심의”로 법문언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
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개정안은 “제재조치등”의 대상이 되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에 대하여 신속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해보면, 방심위 회의의 신속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발한 사례에 대해서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공익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예상된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방통위의 신중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226